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16
------	------

2023. 12. 4.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3. 11. 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23. 12. 4.) 상정,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가. 제안이유

- 민선8기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시계획수립 중심에서 도시공간에 대한 효율적 기획·조정을 위해
'도시계획국' → 「도시공간본부」로 확대 개편
 - 도시공간계획 수립·조정·시행 등 도시공간 혁신 사무 신설
 - 도심활성화 및 서울 전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무 이관
(← 균형발전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아리수본부」 명칭 변경
 - 공급자 관점의 정책적·기능적 명칭에서 시민친화적인 명칭으로 변경
하고 상수도 종합계획 '아리수 2.0'의 성공적 추진 동력 확보

- 그밖에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실국간 사무 조정
 - 갈등관리 실효성 제고 위해 갈등 관련 사무 이관
(행정국 → 기획조정실)

Ⅲ. 검토의견 요약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2024년 상반기 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기획·조정, 아리수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소 명칭의 변경, 갈등관리 업무에 대한 담당 실·국간 사무 조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됨.

나. 2024년 상반기 조직 개편안 개요

- 서울시는 시민들의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 공간 구조를 입체적·복합적으로 개편하는 ‘서울 대개조’를 구상하고, 구체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도시 공간 정책 기능이 집약된 조직 체계 마련과 조직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개편 방안을 포함하는 2024년 상반기 조직 개편을 계획 중임.
- 동 조직 개편안의 주요 사항은 ▶도시계획국의 ‘도시공간본부’로의 확대, ▶기후환경본부의 범위 임시기구인 환경기획관 폐지,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 폐지,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의 대기환경연구부 재편(5급→4급), ▶상수도사업본부의 ‘서울아리수본부’ 명칭 변경, ▶행정국의 갈등관리 기능을 ‘기획조정실’로 이관 등임.

(현행) 6실 4본부 11국 15관·단 5과·담당관 1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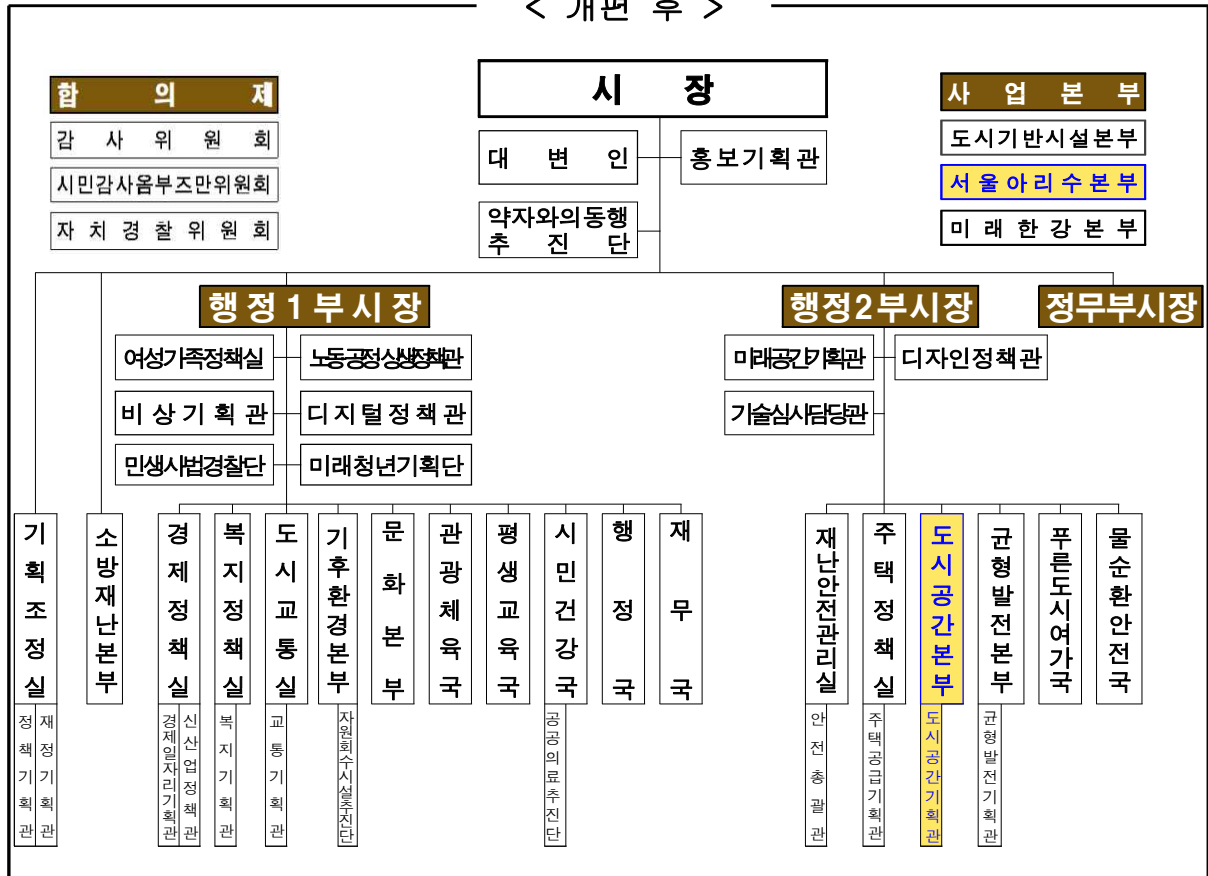
(개편) 6실 5본부 10국 15관·단 5과·담당관 (+1본부, △1국·1임시)

< 신설: ‘도시공간본부’, 폐지: 도시계획국·환경기획관 > * 상세내용은 [\[참고자료\]](#)

< 현 행 >



< 개편 후 >



- 동 조직 개편안의 조례 개정 대상인 사항과 규칙 개정 대상인 사항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음.

< 조직 개편안 내용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대상 구분 >

연번	구분		개정대상*	비고
1	도시공간본부 신설	도시계획국 → 도시공간본부	조례	
		도시공간기획관(3·4급) 신설	규칙	
		도시공간전략과 신설	규칙	
		도시재창조과	규칙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에서 이관
	관련 사항	동남권추진단(3·4급) 폐지	규칙	도시공간기획관(3·4급) 정원 재배치
동남권사업과(4급) 재편		규칙	동남권사업반(4·5급)을 동남권 사업과(4급)로 재편	
2	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 폐지	규칙	코로나19 관련 업무 감염병관리과 일원화 의약무팀 및 마약대응팀 보건의 료정책과 이관
3	보건환경 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 대기환경연구부 재편	규칙	
4	상수도 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아리수본부 명칭 변경	조례	
5	행정국	시민협력과 재편	규칙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 이관에 따른 사무 조정
		남북협력과 명칭 변경	규칙	평화기반조성으로 명칭 변경
6	기획조정실	갈등관리 업무 평가담당관 이관	조례	행정국 시민협력과에서 사무 이관

*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칙 개정 사항은 미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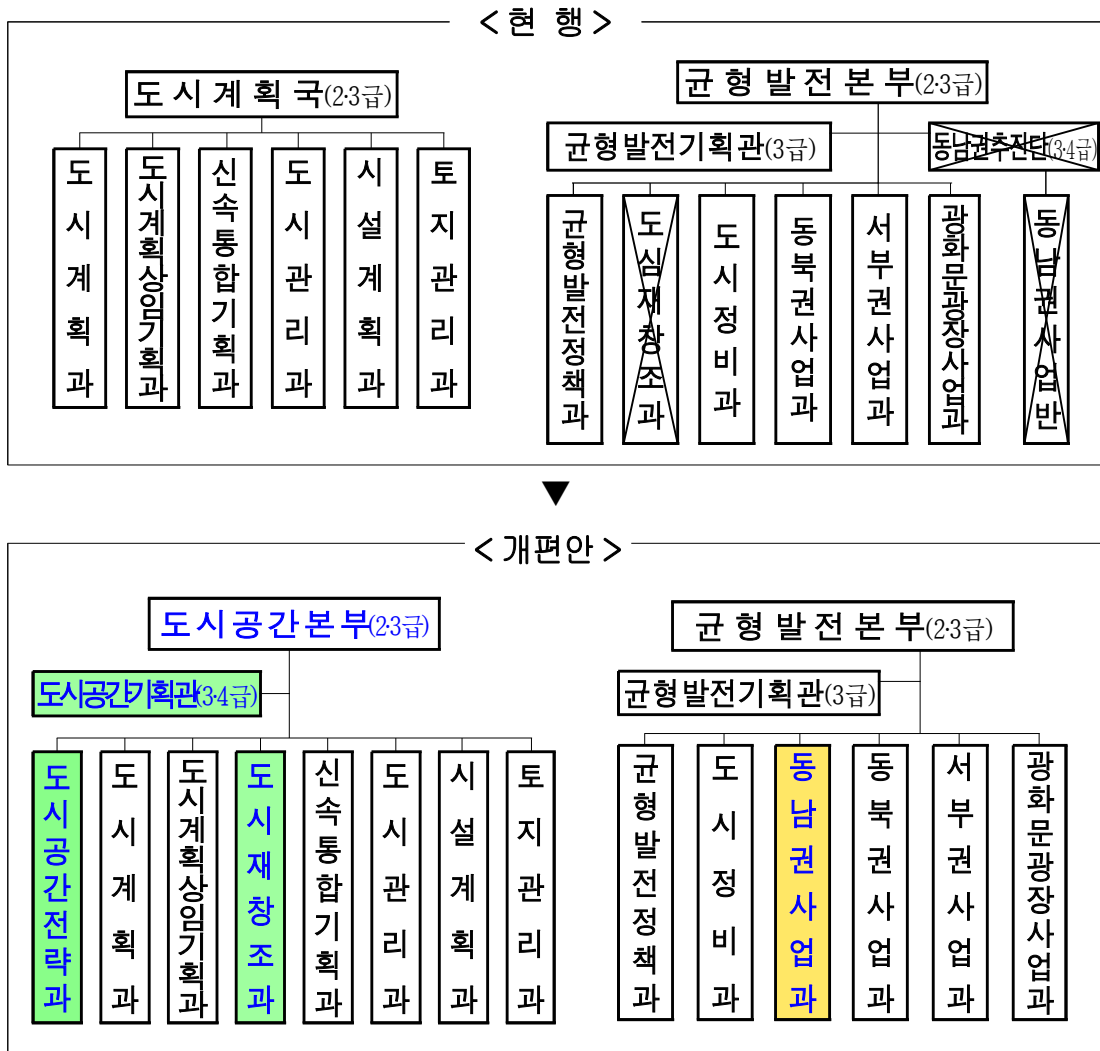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도시공간본부’ 로의 확대·개편(안 제4조, 안 제17조 등)

- 서울시는 기존 도시계획 수립 중심 정책에서 입체·복합적 공간 정책 추진을 위해 업무영역을 넓혀 ‘도시계획국’ 을 ‘도시공간본부’ 로 개편·확대할 계획임[조례 개정 사항].

- 또한 도시공간본부장을 보좌하는 기구로, ‘도시공간기획관(3·4급)’을 신설하고, 기존 도시계획국의 ‘6과’에서 ‘8과*’로 확대함[규칙 개정 사항]. * ‘도시공간전략과’ 및 ‘도시재창조과’ 추가 신설



- 균형발전본부 ‘도시재창조과’를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로 이관하여 균형발전기획관의 통솔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동남권추진단(3·4급)을 폐지하고 ‘동남권사업반’ (4·5급)을 ‘동남권사업과’ (4급)로 재편함[규칙 개정 사항].

- 신설되는 ‘도시공간전략과’ 는 서울 전역의 도시공간 종합계획을 기획·조정하는 총괄부서로, 공간행정팀, 종합계획팀, 공간계획팀, 수변공간계획팀 등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됨.

< 도시공간전략과 내 팀 구성 내역 >

팀 구분	주요 업무	개편 전 부서
(명칭변경)공간행정팀	도시정책컨퍼런스 운영, 본부 주요 사업 홍보 등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종합계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간 종합계획 수립(서울 전역) • 입체복합도시 전략 마련 • 도시공간계획 조정·관리 • 서울대개조를 위한 정책 수립 등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
(신설)공간계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간 종합계획 수립(특정 지역) •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등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
(신설)수변공간계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 • 한강수변 4대 영역 공간기획 • 상암일대 주요거점 재편 •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 •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도시공간전략팀 •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수변복합개발팀
미래공간기획관 →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수변공간계획팀) 이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도시공간전략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도시공간 정책사업 전략 및 실행계획 구상 • 한강수변 4대 영역 공간기획 및 세부실행전략 마련 • 한강수변 공간구상 타부서·기관 협력 사항 (그레이트 한강, 한강 노을명소 조성 등) • 잠수교 전면 보행화 기획(디자인) 공모 추진 • 상암일대 주요거점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 재편 및 종합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수변복합개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활용 복합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수협부지 사전협상 등 절차 이행 • 수도자재센터부지 복합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기시설 이전, 기반시설 복합화 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여의도공원 기획 디자인공모 등

- ‘도시재창조과’ 는 서울 전역에 ‘녹지생태도시’ 를 확산하기 위해 녹지공간 조성 및 복합·고밀 개발사업의 통합 추진을 담당하는 신설 부서로, 균형발전본부의 도심재창조과에서 이관됨[규칙 개정 사항].

-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에 대응하고, 김포공항 및 주변 고도제한 개선 등 공항권역의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팀으로, 도시계획과에 공항권역계획팀을 신설할 예정임.
- 이번 도시공간본부의 신설은 ‘서울 공간 대개조’ 실행에 필요한 역량을 결집하는 조직 개편이면서, 최상위 법정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¹⁾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조치로 판단됨.
- 다만, ‘도시공간기획관’ (3·4급) 신설의 경우,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²⁾에서 ‘기획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보조·보좌기관 및 해당 직급을 살펴보면, 대부분 직급이 2·3급(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지방부이사관)에 해당함.

< ‘기획관’ 명칭 사용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현황 >

연번	보조·보좌기관	해당 직급
1	홍보기획관	2·3급
2	비상기획관	2·3급
3	미래공간기획관	3급
4	정책기획관	2·3급

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1. 걸어서 누리는 다양한 일상, 보행일상권 조성
2. 수변 공간의 잠재력 발굴, ‘수변 중심 공간 재편
3.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 기반시설 입체화
4. 미래성장거점 육성·연계 ‘중심지 기능 혁신’
5. 기술발전에 선제적 대응,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6. 미래위기를 준비하는,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
7. 도시의 다양한 모습 구현, ‘도시계획 대전환’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시·도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5	재정기획관	3급
6	경제일자리기획관	2·3급
7	복지기획관	2·3급
8	교통기획관	3급
9	주택공급기획관	3급
10	균형발전기획관	3급

※ 환경기획관(3급)은 법외 임시기구로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폐지 예정

- 기획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비교할 때, ‘3·4급’의 (도시공간)기획관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의 기획관과 직급이 상이해 실무상 혼선을 일으킬 여지가 있음.
- 한편, 이번 조직 개편안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10개의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의견조회('23.11.3. ~ '23.11.10.)를 실시한 결과, ‘공간’ 명칭 사용에 따른 상임위원회 간 명칭 혼란, 주택공간위원회의 역할 축소 등을 이유로 개정안 처리 보류를 요청하는 주택공간위원회의 의견이 있음.

< 주택공간위원회 회신 의견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16) 관련

- “공간” 명칭 사용에 따른 상임위원회 간 명칭 혼란 및 정체성 훼손으로 개정안 처리 반대
 - 미래공간기획관(주택공간위원회) ↔ 도시공간본부(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역할 축소 및 연속성 저해
 - 한강수변 4대영역 공간기획, 예 노량진 수산시장 사전협상 추진, 한강철교 남단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등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으로 변경 시, 상임위원회 역할 축소 및 시장역점사업에 대한 견제 연속성 저해
 - 부시장 직속기구 미래공간기획관 업무에서 부시장 산하 본부로 업무이관 시, 부서간 업무 칸막이로 비효율 야기
- 11대 의회 전반기 임기를 고려하여, 상임위원회 간 혼란 방지를 위해 후반기 원구성까지 개정안 처리 보류 요청

(2) 상수도사업본부의 ‘서울아리수본부’ 명칭 변경(안 제4장제2절, 안 제56조, 별표 2)[조례 개정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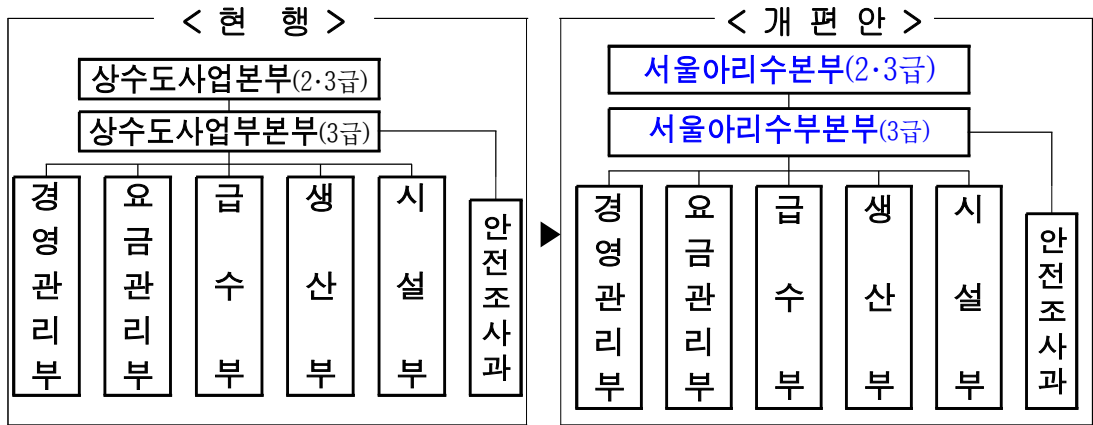
- 건강하고 맛있는 물 공급을 위한 서울시 상수도 종합계획 2040 (아리수 2.0)³⁾의 성공적인 추진과 기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기관 명칭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울아리수본부’로 변경함.

— <아리수 2.0 5대 추진 전략> —

- ① 세계 최고 맛있는 물을 시민에게! 더 건강하고 맛있는 물
 - 서울형 초고도정수처리 연구·도입
 - 정수장 확충 및 현대화
 - 365일 깐깐한 수질검사
 - 맛있는 아리수 음용 확산
 - 세계 최고의 수질관리
- ② 더 가까이 시민속으로! 안심 아리수 문화 확산
 - 시민과 함께하는 아리수 캠페인
 - 수돗물 불편 제로 민원 서비스
 - 아리수 품질확인제 2.0
 - 취약·재난지역 물 복지 지원
- ③ 맛있는 물을 바로 먹을 수 있게! 한강에서 가정까지 맑은 물길 조성
 - 녹물 걱정 없는 클린닥터 서비스
 - 노후 상수도관 교체
 - 수질·수압 취약지역 해소
 - 상수도관 주기적 세척
- ④ ICT 신기술 도입,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
 - 스마트 동파관리 도입
 - 스마트 누수관리 도입
- ⑤ 세계 최고 공기업으로 경영 혁신
 -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 수돗물 절약 추진
 - 저탄소·친환경 경영
 - 대내외 협력 강화

- 서울아리수본부라는 명칭은 아리수를 세계 최고의 맛있는 물로 생산하겠다는 서울시 상수도 종합계획에 부합하고, 직관성이 우수하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

3)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8261(2023. 7. 5.).



(3) 갈등관리 업무의 기획조정실 이관(안 제5조 및 안 제13조)[조례 개정 사항]

- 개정안은 갈등관리의 업무를 행정국(시민협력과)에서 시정 리스크 관리·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로 해당 기능을 이관함.

< 평가담당관의 업무 분장* >

- ⑬ 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조정
 2.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3.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및 종합관리
 4. 국정시책합동평가 업무 수행
 5. 지시사항 평가·관리
 6. 위험관리의 총괄·조정·평가 등 종합운영
 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요 시책 공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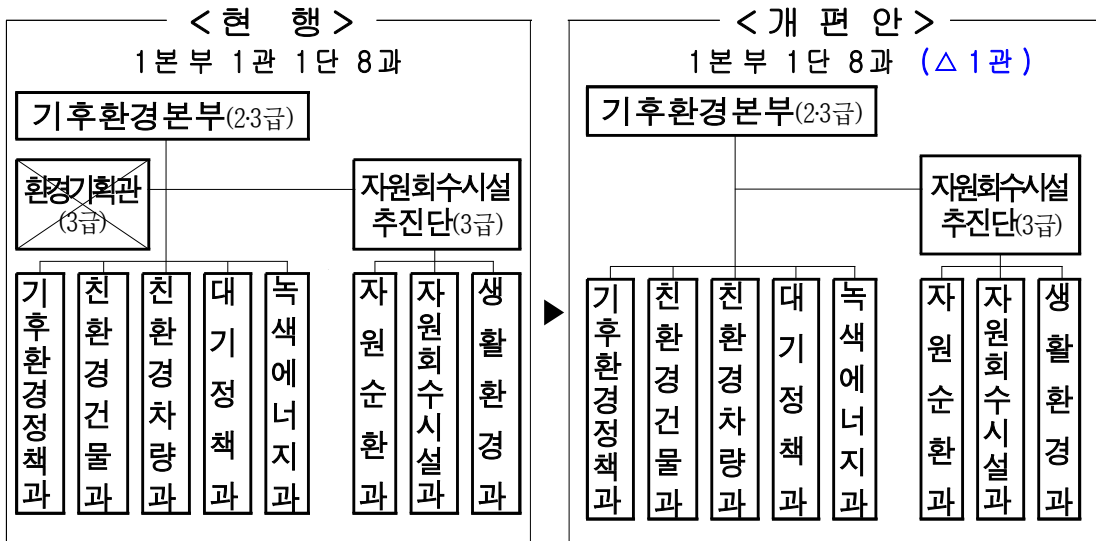
- 정부의 경우, 정부업무평가·정책 조정 등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사회위험 및 갈등관리를 하고 있어⁴⁾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조정, 위험관리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획조정실로의 이관은 업무 유관성을 고려하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4)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라. 그 외 조직개편 사항(시행규칙 사항 등)

(1) 환경기획관 폐지

- 조직 개편안에서 임시 법외기구인 환경기획관(3급)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신설(22년 8월, 한시기구)로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고, 행정안전부와 의 협의⁵⁾에 따라 폐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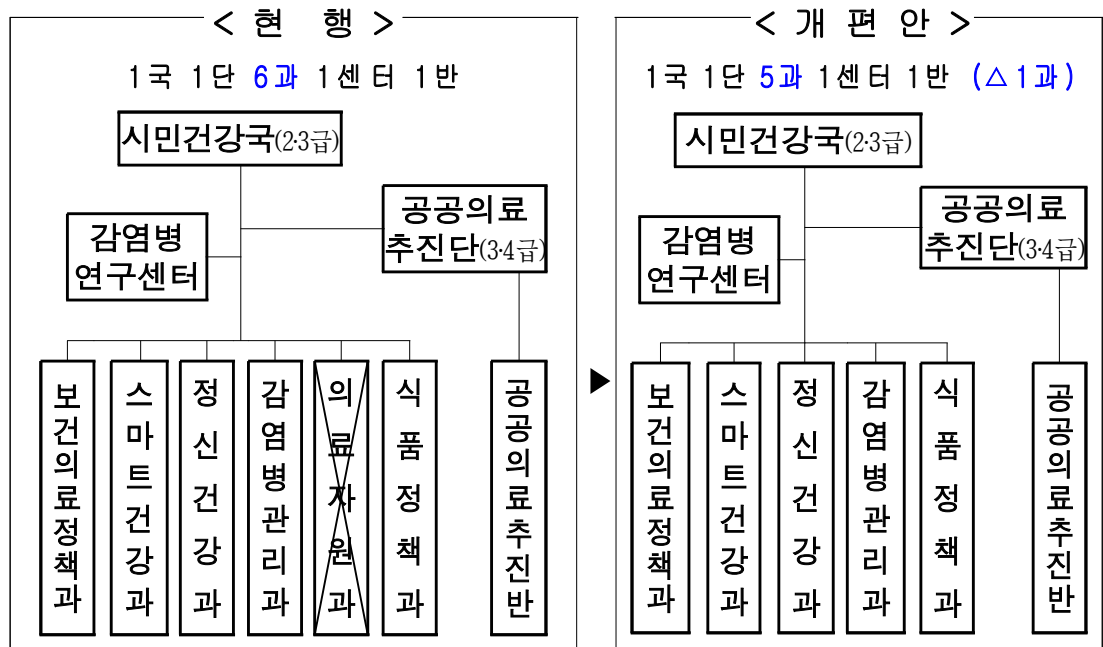


(2) 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 폐지

- 조직 개편안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회복 이후 감소한 업무량을 감안하여 시민건강국의 의료자원과(병원관리팀 · 의약무팀 · 마약대응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타 과로 이관함.

5) 서울시는 2020년 3월 행정안전부에 법외기구 중 국제협력관은 폐지하고(2023년), 그 밖에 법외기구는 연차별로 해소한다는 '기구조정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음(재생정책기획관 2021년, 주택기획관 2022년, 환경에너지기획관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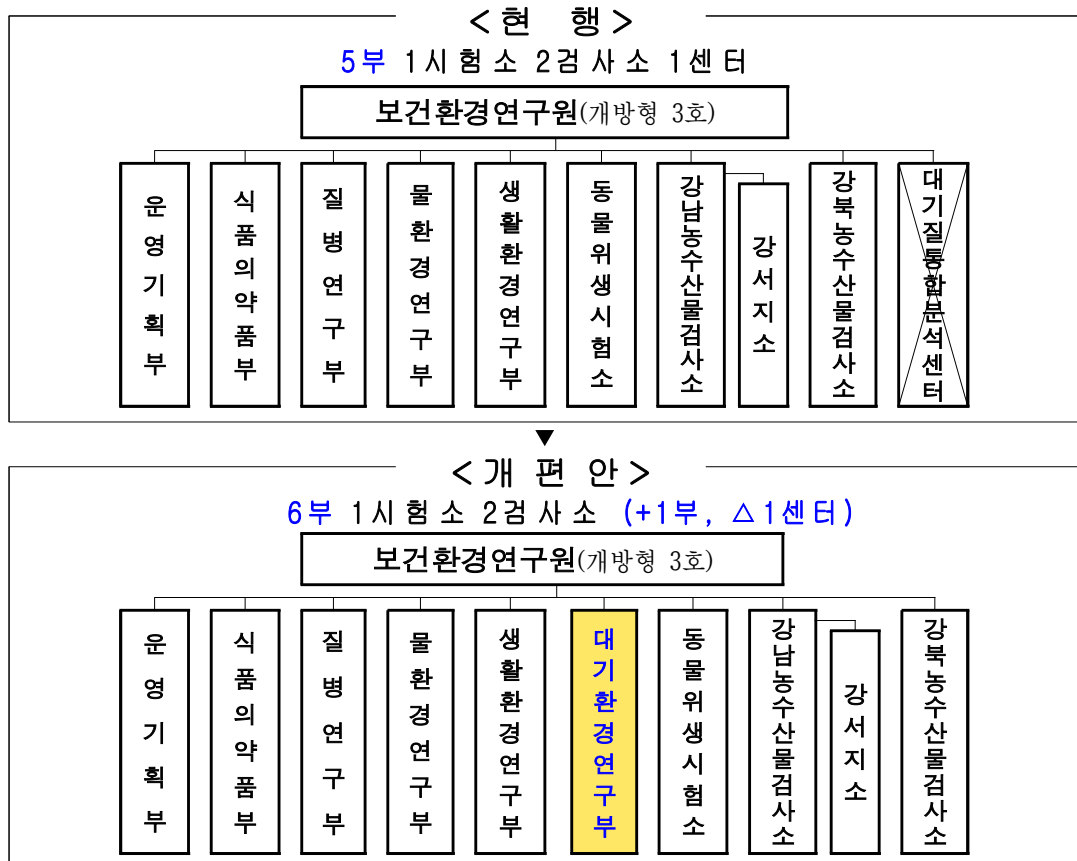
- 코로나19 관련 업무(병원관리팀)는 ‘감염병관리과’로, 의약무팀·마약대응팀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보건의료정책과’로 각각 이관함.



- 그동안 의료자원과는 코로나19 병상 수급 관리 및 통계 총괄, 임시 선별검사소 파견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코로나 확산 시에도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당하였음.
-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증 환자가 줄어들면서 감소한 업무량을 고려한 효율적인 조치이나, 향후 대형 감염병의 재확산시 대응 시스템의 신속한 가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서의 폐지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3) 대기질통합분석센터의 대기환경연구부로의 확대·개편

- 조직개편안은 환경안전 기준 강화와 기후 위기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질통합분석센터(5급 상당)’를 대기환경연구부(4급 상당)로 재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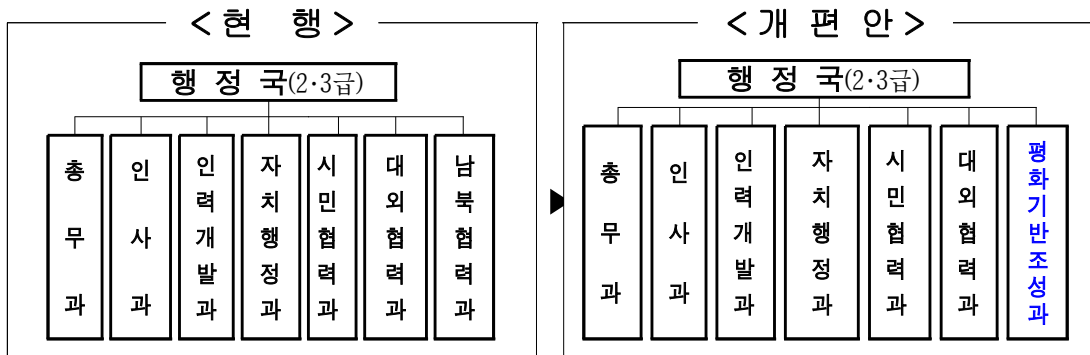


- 최근 환경 관련 이슈가 급증하고 신규물질 검사, 온실가스 측정망 고도화,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수요가 증가하는 등 대기 분야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대기질통합분석센터(5급)를 대기환경연구부(4급)로 직급을 상

향하고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는 것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해 타당한 조치임.

(4) 시민교류·남북협력 업무의 재편

- 조직개편안은 행정국의 기능을 재설계하고자 ‘시민협력과’의 기능을 재편하고(시민협력정책팀 폐지, 자치행정과의 주민지원팀을 이관받음), 남북협력과를 ‘평화기반조성과’로 변경함.



-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단기간에 남북 교류사업의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평화통일 준비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남북협력과의 기능과 명칭을 개편하는 것은 타당함.
- 다만, 시민협력과는 시민협력정책팀을 폐지하고 주민지원팀을 이관받아 3개팀이 유지가 되나, 행정국의 대외협력과(3팀), 평화기반조성과(3팀) 역시 별도의 4급 부서로 존속하기에는 기능과 인력 부분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통·폐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마. 종합의견

- 동 개정안은 서울 대개조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개편하고 조직과 기능을 확대함에 따라 도시공간 정책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존 조직의 기능 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외 임시기구인 환경기획관의 폐지를 통해 그동안의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임.
- 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 결과 주택공간 위원회로부터 반대의견이 제시된 만큼 서울시의 조직 개편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의견 조율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16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민선8기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수립 중심에서 도시공간에 대한 효율적 기획·조정을 위해
‘도시계획국’ → 「도시공간본부」로 확대 개편

- 도시공간계획 수립·조정·시행 등 도시공간 혁신 사무 신설
- 도심활성화 및 서울 전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무 이관
(← 균형발전본부)

나.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아리수본부」 명칭 변경

- 공급자 관점의 정책적·기능적 명칭에서 시민친화적인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수도 종합계획 ‘아리수2.0’의 성공적 추진 동력 확보

다. 그밖에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실국간 사무 조정

- 갈등관리 실효성 제고 위해 갈등관련 사무 이관 (행정국 → 기획조정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3. 10. 6. ~ 10. 10.)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효원 (☎2133-672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한다.

제5조제10호 중 “평가”를 “평가, 갈등관리”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사회협력 및 갈등관리”를 “사회협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공간계획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4. 도심활성화 및 서울 전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도심활성화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개발”을 “도시개발”로 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다목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제33조제1항제9호가목 중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2호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생략)</p> <p>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행정국, 재무국, 재난안전관리실, 주택정책실, <u>도시계획국</u>,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을 둔다.</p> <p>③ (생략)</p> <p>제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9. (생략)</p> <p>10. 성과·목표관리, 행정서비스·지시사항·위험관리의 <u>평가</u>에 관한 사항</p> <p>제13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4. (생략)</p> <p>5. <u>사회협력 및 갈등관리</u>에 관한 사항</p> <p>6.·7. (생략)</p>	<p>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 <u>도시공간본부</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획조정실)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 ----- <u>평가</u> ----- -----</p> <p>제13조(행정국)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사회협력</u>-----</p> <p>6.·7. (현행과 같음)</p>

제17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 2. (생 략)

<신 설>

3. ~ 6. (생 략)

제18조(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본
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3. 도심활성화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 7. (생 략)

제21조(한시기구) ① (생 략)

② 도시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
를 시행하기 위하여 균형발전본
부에 한시적으로 균형발전기획
관을 두며, 균형발전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도심활성화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개발 및 시장

제17조(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본
부장-----.

1. 도시공간계획 수립·조정·
시행에 관한 사항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4. 도심활성화 및 서울 전역 도
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 8. (현행 제3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

제18조(균형발전본부)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 6. (현행 제4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제21조(한시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도시개발 -----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생략)

③·④ (생략)

제2절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제56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별표2]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6조 제2항 관련)

(표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절 서울아리수본부

제56조(설치) ① -----

--- 서울아리수본부-----

② (현행과 같음)

[별표2] 서울아리수본부 하부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6조 제2항 관련)

(표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소관 사무 조정 및 명칭 변경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본 기구 조정으로 인한 정원 변동 관련 비용 추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박효원 (☎ 2133-6729)